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행정 권한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위임사무의 교통국관중 20, 22 내지 30, 32 내지 36, 38, 39, 41, 내지 43, 46, 47, 64의 수입기관관중 “구청장 및 자동차관리사업소장”을 각각 “구청장”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구청장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소장”을 “구청장”으로, “구청장 및 자동차관리사업소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 3 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소장이 행한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자동차관리사업소장에 대한 행위는 구청장의 행위 또는 구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 4 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자치법규에서 자동차관리사업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구청을, 자동차관리사업소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구청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委員長 朴尙東 議事日程 第7項 서울特別市 公園綠地管理事業所設置條例案에 대하여 質疑 하실 委員 있으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潤構委員 이것 지금 新政府도 자꾸만 廢止하고 하는데 이것 아직 우리 委員들이

內容도 자세히 모릅니다. 왜냐 하면 이것 오늘 처음 접하는 것이 되어서 우리 委員들도 한 번 研究 檢討해야 되니까 이 다음 會期에 다루는 것으로 하고 留保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動議합니다.

(「同意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朴尙東 다른 委員님들 質疑하실 委員 없으시면 議決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蘇中天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蘇中天委員 全潤構委員님이 지금 動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贊成을 하면서, 저희 委員님들이 研究하면서 參考가 되는 점을 제 나름대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自治區에서 管理하던 事項을 지금 우리 廣域으로 넘어오는 것이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네.

○蘇中天委員 그런데 제 생각같으면 公園이라든가 綠地는 내 주위에, 소위 自治區에서 管理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여기는 저희들이 근본적인 業務의 性格을 가지고 제가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管理業務를 區廳에다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區廳에다 맡겨놓음으로 인해서 區廳에서는 거기에 管理의 費用이라든지 管理의 人力이라든지 이 狀況에 대해서 차츰 차츰 自治區 나름대로의 異意가 提起되고 있습니다. 왜, 서울市 즉, 本廳의 財產을 區廳에서 管理를 해야 하느냐 하는 事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自治制가 차츰 定着化되어가는 마당에 서울市 本廳의 財產은 本廳에서 管理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自治區의 意見입니다.

또 특히 지금까지 自治區에서 아무 異意 없이 管理해 오던, 예를 들어서 市內에 있는 噴水臺 등의 水景施設에 대해서도 왜 區廳에서는 하등의 利益이 없는데도 區廳에서 管理를 해야 되느냐 하는 정도까지 意見이 提起되고 있는 事項입니다. 그래서 이 財產